

●환경부공고 제2020-67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3.24.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구체화(안 제1조의2)

과학적 실험용·분석용·연구용, 시제품, 전량 수출용 이외에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살생물제로 하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제품이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의 적용 대상

인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신청을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승인 방법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시 제출자료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승인 시 제출 자료를 현행화하고 변경승인·신고 시 제출자료와 절차를 규정함.

다.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 보완(안 제23조제1항)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정부가 해당 용도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살생물물질이 들어 있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봄.

라.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신설(안 제25조의2)

법 제32조의2의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동일한 물질·제품에 대해 척추동물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마.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 보완(안 제33조)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일정 기간 분석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함.

바. 화학제품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사항 신설(안 제37조제2항·제3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 항목을 규정함.

사. 포상금의 지급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절차와 한도 금액을 설정함.

아. 업무 효과성 증대를 위한 위임·위탁사항 개정(안 제38조, 제39조)

법 개정 사항을 위임·위탁사항에 반영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

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위임하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에 대한 교육, 기술적 지원 등을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함.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및 통보사항(안 제39조의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물질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자료보호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0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①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살생물제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의 적용 대상인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확인 및 신고”를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로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해당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등 포장단위
3.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과 그 원료물질의 배합비율 및 용도
4.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원료물질(이하 “주원료”라 한다)의 제조원(위탁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5. 주원료와 해당 제품의 유해성 및 해당 제품의 효과·효능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

6. 원료물질 및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결과 및 그 시험·검사의 기준·방법

7. 해당 제품의 용법·용량, 폭발·화재·노출 시 응급조치 사항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

8. 해당 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②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제6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으로 한다.

5. 법 제36조의2에 따른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을 “사용된 살생물물질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법 제12조제1항 단서”로, “살생물물질”을 “살생물물질인 경우”로 하며, 같은 호

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될 때 안전하다는 것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살생물물질인 경우

② 제1항제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정부의 인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환경부장관이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제26조 중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를 “척추동물시험자료”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장비를 각 1대 이상”을 “장비 등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측정장비와 분석기기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분야”를 “분야에서 3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분야”를 “분야에서 1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인력”을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분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의 신고·승인, 변경신고·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9의2.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9의3.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업무

14.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

15.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명칭,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성분, 함량 및 물질별 사용 용도

3. 유해성·위해성 정보

4. 효과·효능, 용법·용량,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③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과 제품의 제조·수입자 정보 및 사용 시 주의사항

2. 제품에 들어있고 사용 시 노출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등급조치 정보

3. 그 밖에 제품별 소관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제5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포상금을 별표 1의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3백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접수”를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제25호, 제26호 및 제2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중전의 제21호) 중 “제6조제3항에”를 “제6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중전의 제22호)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 제28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

- 승인의 접수 및 승인,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 1의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의 공개
- 1의4.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고시
- 1의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기준의 고시
- 7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기준의 고시
20.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에 관한 업무
21.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22. 법 제60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3.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7.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8.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30.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세부 기준 및 지정·변경지정·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38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11. 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

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의 공개

제39조제1항제6호(종전 제4호) 중 ‘홍보’를 ‘홍보(제2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 제5호) 중 ‘지원’을 ‘지원(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 제6호) 중 ‘법 제47조제1항에’를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에 관한 업무

10.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11.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 제2항)의 “확보”를 “확보·제공”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2.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3. 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제6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제1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에 관한 업무

3.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사용 동의에 관한 업무

② 법 제54조의2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및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 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살생물제를 수입하기 위해 법령 상 필요한 살생물제 정보

4. 살생물제 수입자의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살생물제 정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변경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살생물처리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해당 기간 내에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1년 이내로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내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선임된 자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수입자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승인유예기간 동안 살생물물질을 승인받지 않고 수입하고 있으나,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했다면 선임된 자가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살생물물질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 품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가. 살균제 나. 살조제[殺藻劑: 물놀이시설, 수족관 등의 조류(藻類)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살서제(殺鼠劑: 쥐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라. 살충제 마. 기피제(기피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바. 목재용 보존제 사.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아.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 제품보존용 보존제 차.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카.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타. 건축자재용 보존제 파. 재료·장비용 보존제 하. 사체·박제용 보존제 거.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	--

2.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유해성·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승인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의2] <신 설>

포상금 지급 기준(제37조의2 관련)

신고 사항	지급 금액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다목, 같은 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자	30만원 이하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자	10만원 이하
3.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한 자	5만원 이하
4.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한 자	5만원 이하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호	300	500	1,000
나.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2호	300	500	1,000
다. 법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3호	300	500	1,000
라. 법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법 제60조제1항 제4호	300	500	1,000
마. 법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5호	600	800	1,000
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6호	600	800	1,000
사.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7호	600	800	1,000
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8호	600	800	1000
자.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0조제1항 제9호	600	800	1000
차.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0호	600	800	1,000

카.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1호	300	500	1,000
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2호	300	500	1,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조의2(적용범위) ① 법 제5조 제2항제5호에서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살생물제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의 적용 대상인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되어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어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
 - 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

--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 ---

---.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6항

-----.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식별 정보

나. 화학물질의 용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

바.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효과·효능

나. 해당 제품의 유해성

다.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에 관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라.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 사항 및 보호구 등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자료

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신 설>

2. 해당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등 포장단위

3.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

<신 설>

는 모든 원료물질(이하 “원료
물질”이라 한다)과 그 원료물
질의 배합비율 및 용도

<신 설>

4.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
는 원료물질(이하 “주원료”라
한다)의 제조원(위탁 제조하
는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신 설>

5. 주원료와 해당 제품의 유해
성 및 해당 제품의 효과·효
능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

<신 설>

6. 원료물질 및 해당 제품의 품
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결
과 및 그 시험·검사의 기준
· 방법

<신 설>

7. 해당 제품의 용법·용량, 폭
발·화재·노출 시 응급조치
사항 및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

<신 설>

8. 해당 제품의 노출경로, 노출
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②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통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 제1항 또는 제2항-----

-----.

④ -----

---제3항-----

-----.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표시) 법 제10조제6항에 따
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
0일 이내(제3항에 따른 수정 또
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
하지 않는다)에 변경승인 여부
를 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통
지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표시) 법 제10조제8항-----

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 4. (생 략)

제8조(승인 제외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1.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2.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같은 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12조제1항 ---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③ -----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

----- 해당 살생물물

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

1. ~ 6. (현행과 같음)

7. <u>법 제1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u> <u>제16조(승인 제외 살생물제품)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u> 1. <u>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u> 2. <u>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같은 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u> <u>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u> 1. ~ 4. (생략) 5. <u>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u>	7. <u>법 제14조제6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u>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36조의2에 따른 제조.</u>
--	---

· 보관시설의 설치·운영 계획 또는 현황 ② (생략)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⑤ (생략)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u>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u>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u>살생물제품유형</u>”이라 한다)으로 <u>사용된 살생물물질</u>	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시험방법 및 평가방법</u>--.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① ----- ----- ----- -----. 1. <u>살생물제품</u>----- ----- ----- ----- ----- ----- ----- ----- <u>사용된 살생물물질인 경우</u>
--	---

나.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신 설>

2. (생 략)

<신 설>

<신 설>

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

살생물물질인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될 때 안
전하다는 것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살생물
물질인 경우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 환경부장관
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정부의 인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32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
제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
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 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u>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5. <u>환경부장관이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척추동물시험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u>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u>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u>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 략)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u>장비</u>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 ----- ----- <u>척추동물시험자료</u>----- ----- ----- ----- ----- ----- ----- --- 제3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장비</u>

를 각 1대 이상 갖추 것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추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의 시험·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의 시험·검사 경력이 있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

등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측정장비와 분석기기를 -----

3. -----

가. -----

----- 분야에서 3
년 이상-----

나. -----

----- 분야에서 1년 이상-----

② (현행과 같음)

③ -----

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절
차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5. (생략)

④ ~ ⑥ (생략)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의 처리 업무) 법 제47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
한다.

1.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의 신고 및 승인에 관한 업
무

2. ~ 9. (생략)

<신설>

<신설>

-----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분야-
-----.

제34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절
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의 처리 업무) ① -----

-----.

1.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
인, 변경신고·변경승인에 관
한 업무

2. ~ 9. (현행과 같음)

9의2.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9의3.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10.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확인에 관한 업무

10. ~ 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51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업무

14.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

15.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명칭,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성분, 함량 및 물질별 사용 용도

3. 유해성·위해성 정보

4. 효과·효능, 용법·용량,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③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신 설>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과 제품의 제조·수입
자 정보 및 사용 시 주의사항
2. 제품에 들어있고 사용 시 노
출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응급조치 정보
3. 그 밖에 제품별 소관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제37조의2(포상금) ① 환경부장관
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증거자료를 갖추
어 신고한 자(해당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포상금을 별표 1의2에 따라 지
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된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처분
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
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
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3백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 5. (생략)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의 접수

7. (생략)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

-----.

1. 법 제10조제6항-----

- 1의2.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의 접수 및 승인,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 1의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의 공개

- 1의4.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고시

- 1의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기준의 고시

2. ~ 5. (현행과 같음)

6. -----

--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 1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0. (생 략)

21.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2.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
방법의 고시

7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기준의 고시

8. ~ 19. (현행과 같음)

20.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
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
등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에 관한 업무

21.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
고 접수에 관한 업무

22. 법 제60조제1항제3호·제4
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3.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
에 관한 업무(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4. (현행 제20호와 같음)

25. 제6조제4항에 -----

26. -----
----- 시험
방법 및 평가방법-----

2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략)

<신설>

6. ~ 10. (생략)

<신설>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

29. (현행 제23호와 같음)

27.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8.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30.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변경 지정·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②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6.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

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신설>

<신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의 공개

6. -----
----홍보(제2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7. -----
-----지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제외한다)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9.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에 관한 업무

10.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11.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한국환경산업기술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 설>

원장에게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2.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3. 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③ -----

----- 확보·
제공-----

-----.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① 법 제54조의2

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 승인 신청계획서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에 관한 업무

3.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사용 동의에 관한 업무

② 법 제54조의2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및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 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살생물제를 수입하기 위해 법령 상 필요한 살생물제 정보

4. 살생물제 수입자의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u>살생물제 정보</u>
--	----------------